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3조제4항”을 각각 “법 제13조제6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1호나목 후단 중 “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”을 “기간의 계산”으로, “최초로 행정처분을 한”을 “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2조(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) ① <u>법 제13조제4항</u>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2조(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) ① <u>법 제13조제6항</u> ----- ----- -----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	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<u>법 제13조제4항</u>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, 공개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	② ----- <u>법 제13조제6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	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	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			
<u>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(제36조 관련)</u>	<u>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(제56조 관련)</u>			
1. 일반기준 가. (생 략)	1. 일반기준 가. (현행과 같음)			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<u>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u>	나.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<u>기간의 계산</u> ----- ----- <u>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</u> -----.			
<신 설>	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			

2. 개별기준(생 략)	<u>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</u> 의 다음 차수로 한다.
2. 개별기준(현행과 같음)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수거래과	
연 락 처	044-200-4438